

[ 2011.7.7 ] [ 109 , 2011.7.7, ]

( ) 02 - 2100 - 6378~80

1 ( ) 「 」

[ 2011.7.7 ]

2 ( 가 ) 「 」 ( " " ) 4 1  
가 「 」 19

( " " )

- 1.
- 2.
- 3.
- 4.

4 3 가 1  
「 」 ( " " ) 3 3 가  
1 2 가

[ 2011.7.7 ]

3 ( 가 ) 5 가

1. 1 18 ( . . 가  
24 )

2. 가. : , ( ), ,

. :

3. 10 2

4. 90  
1 「 」 41 2 , 3

「 」 28 3 2 가 .

. 가

[ 2011.7.7 ]

4 ( ) 10 1  
, 19 1 ( " )

1. 7 2 1 3 :

2. 7 2 2 :

---

3. 7 2 4 :

4. 7 2 5 :

5. 7 2 6 :

1

1

1. ( )

2.

1 2

2

1 3

10 2

2

[ [2011.7.7](#) ]

5 ( ) 1 • 3 4

[ [2011.7.7](#) ]

6 ( ) 12 1

4 3 4

4 4 " " "

"

12 2

3

[ [2011.7.7](#) ]

7 ( ) 13

13 1

7 1

2 3

18

[ [2011.7.7](#) ]

8 ( ) 15 1

4 3

15 2

4

3

2

8

[ [2011.7.7](#) ]

9 ( ) 16 1 2

35

[ [2011.7.7](#) ]

---

10 ( ) 17

1

1

1

[ [2011.7.7](#) ]

11 ( ) 가

(學事)

가

가

[ [2011.7.7](#) ]

12 ( )

1

[ [2011.7.7](#) ]

13 ( ) 22 1

22 2

「

」 2 2

[ [2011.7.7](#) ]

14 ( )

[ [2011.7.7](#) ]

< 713 ,1998.2.28 >

< 727 ,1998.11.14 >

< 752 ,1999.9.3 >

< 779 ,2001.1.31 > ( )

1 ( )

---

2

3 ( ) <39>

<40>

3 1 2 . 2 , 7 , 8 1 . 4 , 10 2 14 " "

" " .  
2 2 " " " " .  
1 4 " " " " .

<41>

< 786 ,2001.7.6>

. , 7 2 2002 3 1 .

< 826 ,2004.2.7>

.

< 858 ,2005.4.27>

. , 1 6 .

< 1 ,2008.3.4>( )

1 ( )

2 4

5 ( ) <48>

<49>

2 3 , 3 1 2 , 2 3 , 7 1 , 8 1 4 ,

10 4 , 13 14 " " " " .

4 " " " " .

1 , 1 2 4 " " " " "

<50>

<63>

< 23 ,2008.12.26>

.

< 109 ,2011.7.7>

[별 표] <개정 2011.7.7>

학점인정의 세부 기준(제5조 관련)

구 분	학 점 인 정 의 세 부 기 준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이수자	가. 해당 학습과정을 마치는 데 필요한 총 시간의 80퍼센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나.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자 및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사람	50분(실험·실습·실기의 경우에는 100분)을 1단위로 하여 15단위 이상을 이수한 경우를 1학점으로 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인정한다.
3.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험합격자 및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교양과정 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자: 과목당 4학점 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자: 과목당 5학점 다.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자: 과목당 5학점 라.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자: 과목당 5학점
4.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140학점 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전수 교육 조교: 60학점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30학점 라.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받은 사람 1)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21학점 2) 전수 교육을 2년 이상 3년 미만 받은 사람: 14학점 3) 전수 교육을 1년 이상 2년 미만 받은 사람: 7학점 4) 전수 교육을 6개월 이상 1년 미만 받은 사람: 4학점

비 고

1. 위 표 제1호의 학습과정 이수자 및 제3호의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자가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60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에는 9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 중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에 대해서는 60학점을 초과할 수 있다.
2. 위 표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하거나 합격한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되는 과목 또는 시험에 대한 학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학습과정 평가인정서

발급번호		발급일			
신청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한글)	성명(한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인정내용	과목명	이수기간(주)	시수/주	학점	
평가인정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인정합니다.

년    월    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직인

## 평가인정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고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평가인정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한글)		성명(한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변경내용	학 습 과 목 명	변경사항		변경 사유
		( )		
		변경 전	변경 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 (재활용품)]

## 학 점 인 정 서

발급번호	발급일	
신청인	성명(한글)	성명(한자)
	학번	
	주소	전화번호

과목명	학점	과정 이수 기관명 (시험명)	이수 연월 (합격 연월)	과목명	학점	과정 이수 기관명 (시험명)	이수 연월 (합격 연월)

학점인정(자격증 취득자만 적습니다)

자격증명	발급기관명	자격증번호 (취득 연월일)	인정학점	표준교육과정상의 관련 전공
			총 학점	
			총 학점	
			총 학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학점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평생교육진흥원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2중) 70g/㎡)



제 호

## 학력인정증명서

성 명:

학 번:

주민등록번호:

전 공:

위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 )  
졸업 학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생교육진흥원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제 호

# 학 위 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공:

위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생교육진흥원장 **인**

위 증명에 의하여 ( )의 학위를 수여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직인**

학위 등록번호 \_\_\_\_\_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